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8. 20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행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,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함.(안 제14조)

### 3.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행정자치부준칙안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호중 “60제곱미터이하인”을 “85제곱미터이하인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- ③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